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781호

나. 발 의 자 : 오한아 의원

다.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2. 제안이유

프로스포츠단 지원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서울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프로스포츠단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8의2호 신설)

나.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제4항 신설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조례안은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¹⁾상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스포츠단 지원 규정을 근거로 서울시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프로스포츠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됨.

나. 프로스포츠 진흥 현황

- 현행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, 야구, 배구, 농구 4개 종목 9개 서울시 연고팀²⁾은 잠실종합운동장, 서울월드컵경기장, 서남권돔구장, 목동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 우선사용³⁾ 및 사용료 경감 지원⁴⁾이 있을 뿐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는 상황임.

1)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 제17조(프로스포츠의 육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,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2) 축구(FC서울, 서울이랜드FC), 야구(LG트윈스, 두산베어스, 키움히어로즈), 배구(GS칼텍스, 우리카드), 농구(삼성썬더스, sk나이츠)

3)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사용허가)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체육경기 :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서울특별시교육청(산하 지역교육청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협회(단체)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최(주관)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. 다만,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.

4)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을 근거로 체육행사 대비 30%, 일반행사 대비 50% 내외로 감면 지원함.

- 프로스포츠 중 시민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은 축구종목의 경우 프로리그(K1·K2)와 세미프로리그(K3·K4), 아마추어리그(K5·K6·K7)가 운영 중이며 서울시는 프로팀으로 ‘FC서울’ 과 ‘서울이랜드 FC’, 세미프로팀으로 ‘서울노원유나이티드’ (K4)와 ‘서울중랑축구단’ (K4)이 활동 중임.
- 그 간 세미프로리그(K3·K4) 팀의 경우 열악한 수익구조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와 자치구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시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.
- 경기도의 경우 연고 시민프로축구단(K1·K2) 5개 팀에게 훈련환경 개선 및 경기력 향상 비용으로 팀별 5천만원씩 지원하고, 시민축구단(K3·K4)은 10개 팀에 각 1억원씩 지원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.

다. 프로스포츠 정의와 지원(안 제2조8의2호, 안 제8조제4항)

- 안 제2조8의2호를 신설하여 ‘프로스포츠단’ 을 「국민체육진흥법」⁵⁾의 용어를 준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8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8. (현행과 같음)

5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(정의) 11. “경기단체”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.

<u><신 설></u>	8의2. “프로스포츠단”이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.
--------------------	---

- 안 제18조제4항은 시장이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의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명문화함.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지원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서울시의 경우 생활체육과 체육복지 진흥, 체육인 인권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「스포츠산업 진흥 조례」를 별도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임.
- 경기도, 경상남도, 강원도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 등의 경우 “스포츠산업 진흥 조례”를 별도로 제정하여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상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포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 프로스포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,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담당 조사관	박지혜 2180-8117
전문위원	강현 2180-8114

붙임 1**집행부 검토의견**의안번호
2781**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오한아 의원 외 9명	2021. 10. 14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프로스포츠단의 정의 규정(안 제2조제8의2호) ○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8조제4항) 		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1. 10. 14. 오한아 의원 발의 ※ (찬성) 경만선, 김소영, 김화숙, 노승재, 신원철, 신정호, 이종환, 최영주, 황규복 의원(9명) 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에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스포츠단 지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, 현행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에는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 상황임 ○ 따라서, 동 조례에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 프로스포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,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				
대응방안	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				
향후계획			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	팀장	홍성수(☎2133-2677)	담당	이신영(☎2133-2682)